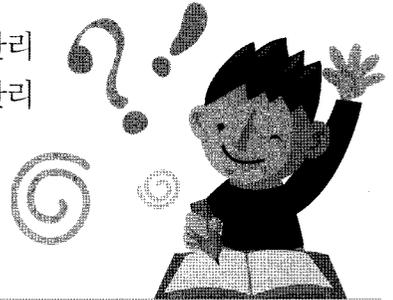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환경성검토 대상여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2008. 4월에 야적장(창고) 및 제조업소, 기숙사로 부지 5,155㎡을 개발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받고 소음진동배출시설만을 가진 공장으로 설립승인을 받으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등의 채취, 나무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0. 10월 현재 공장 업종을 변경하려 하였더니 폐수배출시설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새로이 이행하여야 하나요? 만약 할당된 수질오염총량이 없을 경우 공장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고 사업을 변경이 가능합니까?

A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2에 의한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시설의 업종 변경 등으로 허가, 인가, 승인 등 신규 행정절차를 수반하고, 업종변경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오염행위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위주로 사전환경검토서를 간략히 작성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개발사업 목록에의 포함 여부 등 지자체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가 검토되며, 그 검토 결과 지역개발부하량 초과, 잔여량 부족 등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개발사업의 시행(공장의 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등 총량관리 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자체의 총량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장 건축전 유독물 사용신고 해당유무는?

공장 건설공사 중 보일러, 초순수등 시운전, TEST 시 사용하는 약품이 유독물에 해당될 경우 유독물사용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요? 또한 유독물은 실제 사용, 구입자가 신고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건물, 설비공사는 시공사에서 진행하고 공사, 시운전 완료 되었을 경우 발주사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인수인계 전 사용한 유독물의 신고 주체는 누가 되는지요?

A 유독물을 사용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의거하여 유독물 사용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제7호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량의 일정기준 이하를 사용할 경우 영업등록 면제를 두고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아래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5조의 제7호〉: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만약, 사용업 등록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귀사에서 사용업 등록대상이 되어 관할 지자체에 사용업 등록을 하셨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공완료 후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별도로 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는?

하천공사중인 건설회사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배수구역내에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였고 신고필증도 받았습니다. 3개소는 기설치하였고 1개소는 현상상황으로 인해 침사지가 필요치 않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때 비점오염원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질의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의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폐수위탁처리의 주체는?

사업장내 발생폐수는 전량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배관내부 타르핏치를 제거하는 정비작업관련하여 고압수 분사로 인해 발생 되어지는 폐수는 정비작업업체 책임하에서 폐수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수발생 원인이 배관내부 Cleaning 작업관련 고압수 분사로 인해 발생되고, 이때 발생하는 폐수(*1회 작업시 폐수발생 물량은 50톤 이하임.)는 정비업체에서 작업수행 관련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폐수배출 주체가 장기계약된 정비업체가 되고, 또한 발생된 폐수를 폐수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배출처리해야 하는 주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배관소유자인 사업장에서 직접 폐수위탁처리관련 변경신고를 하고 폐수위탁처리업체와 직접계약 해야 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장내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주가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를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관내 청소수에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하므로 자가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이때 폐수배출시설 신고자인 사업장의 소유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소각시설 정기검사의 주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입니다. 최초 가동개시일은 1995. 3. 1이며, 2007년에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하수슬러지 혼합소각설비를 설치하여, 변경허가 후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개시 신고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용개시일은 2008. 1. 1, 설치검사일은 2007. 11. 26입니다. 굴뚝자동 측정기 설치 및 전송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그 이후는 3년마다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설치검사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해야 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소각시설의 최초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관계센터와 연결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에 4차 초과시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그 해당공사의 완전중지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주어지는 공사중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 21]에 따른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기간은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의 피해정도 및 개선명령 실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중지명령 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